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19
----------	------

제출일자: 2015. 11. 10.  
제 출 자: 광진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규정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4. ~ 11. 2.)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장애 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이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긴급복지 지원항목인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지원에 대한 비용 발생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 비율로 분담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가 신설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김영태

복지정책과장 강 성 구